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0
----------	------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7일

발 의 자 : 서윤기·김정태·우창윤
김동욱·김제리·진두생
신건택·최웅식·유광상
김인호·황준환·이신혜
유찬중·박호근·박운기
유동균·장인홍·강구덕
오승록·최영수·김용석(서초)
김광수(도봉)·한명희·김동승
김혜련·이병해·이윤희
장홍순·신원철·박진형
이승로·오봉수·김희걸
김동율·김문수·우형찬
김미경 의원(37명)

1. 제안이유

국가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시민의 행복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시민행복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반성 없이 관성적으로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여 헌법이 천명한 시민의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의 행복중심으로 공공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행복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시민행복 추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시민참여 확대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행복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행복지표의 개발·보급과 행복지수의 측정·공표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마. 행복정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 바. 행복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2조).
- 사. 행복영향평가, 행복인지 예산, 행복증진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행복추구 및 행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복”이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안녕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행복추구 및 행복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행복증진의 기본 방향
2. 행복증진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행복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시책
4. 행복증진을 위한 추진체계
5. 행복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6.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7. 그 밖에 행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제7조(행복지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한다.

② 시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한다.

③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

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④ 시장은 행복지수의 개발 및 측정을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경제·사회·환경 등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2.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4. 그 밖에 행복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은 시민단체, 학계 등 행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지정·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 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행복증진 사업)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행복한 가정 조성사업
2. 행복한 직장 조성사업
3.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
4. 그 밖에 행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행복영향평가)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행복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행복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행복인지 예산) ① 시장은 예산이 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행복인지 예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복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를 위하여 행복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행복증진 교육)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 공기업 및 지자체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복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가정,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행복증진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한다.

제16조(위탁) 시장은 제12조 각 호의 사업 및 제15조에 따른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행복증진을 위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관·단체·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제정조례안 제7조(행복지수 등), 제9조(구성 등), 제12조(행복 증진사업), 제15조(행복증진 교육), 제16조(위탁)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추계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823,7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823,700천원으로 연평균 164,740천원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18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안 제7조 및 제12조, 제15조, 제16조는 위탁사업에 관련된 비용으로 서울시 유사사례 준용
 - ※ 행복지표 개발관련 비용은 서울시 ‘종로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 사업 준용 하였으며, 연구개발은 연2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 행복증진 교육과정의 강사 구성은 4명으로 매월4회 1시간 강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강사료는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를 참조 하여 비용추계
 - 안 제9조의 위원회 구성은 서울시 유사사례 준용
 - ※ 위원회 구성 수는 40명으로 하되, 수당은 당연직(위원장) 1명을 제외한 39 명에게 지급하고, 위원회 회의는 연2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물가 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823,700천원

(단위:천원)

연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11,700	11,700	11,700	11,700	11,700	58,500
	행복증진 사업(위탁)	153,040	153,040	153,040	153,040	153,040	765,200
	소계(b)	164,740	164,740	164,740	164,740	164,740	823,700
□ 총 비용(b-a)		164,740	164,740	164,740	164,740	164,740	823,700

○ 세부산출내역

사 업 명	세부산출내역	예산액
합 계		164,740천원
위원회	° 위원회 참석수당 - 150,000원×39명×2회 = 11,700천원	11,700천원
행복증진 사업 (위탁)	° 교육사업 - 120,000원×4명×4회×12개월 = 23,040천원 ° 일반사업 - 130,000,000원×1식 = 130,000천원	153,040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 훈

주무관 박수진

☎ 02-3705-1286

e-mail : park1002@seoul.go.kr

[참고자료]

종로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주민참여)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종로 행복지표 개발	= 130,000천원
	- 지표개발 연구용역비 90,000,000원*1회	= 90,000천원
	- 지표 측정 전문가 및 주민워크숍 등 개최	
	20,000,000원*2회	= 40,000천원

자료 : 서울시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2017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지원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평생교육 워크숍 및 통합연수 8,000,000원*1식	= 8,000천원
	○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 5,000천원
	- 위원 참석수당 150,000원*15명*2회	= 4,500천원
	- 회의자료 인쇄 및 소모품 구입 250,000원*2회	= 500천원
	○ 재능나눔학교 운영	= 14,600천원
	-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200,000원*20개*2회	= 8,000천원
	- 수강생 모집 홍보 2,500,000원*2회	= 5,000천원
	- 강사 간담회 개최 등 1,600,000원*1식	= 1,600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평생교육 운영활성화 추진 9,500,000원	= 9,500천원

자료 : 서울시 평생교육국 평생교육담당관. 2017